



# 보도자료

2020. 9. 21.(월) 배포



##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등 3개 법령 제·개정안 확정

- ◆ 1천만 원 이상 배임·횡령 임원,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
- ◆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: 3개월 → 1년
- ◆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,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
- ◆ '교육경험 이사'의 자격 요건 명확화
- ◆ 용도 미지정 기부금은 법인회계 세입 불가,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
- ◆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이사 여부 공개 의무화

- 지난 12월 발표된 「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」에 따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령 제·개정안이 확정되었다.
  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9월 22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통과되어 9월 25일자로 공포 예정이며,
  - 같은 날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개정안, 「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도 함께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□ 이번 제·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사립학교법 시행령 >

○ 1천만 원 이상 배임·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,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승인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(수익용 기본재산의 30% → 10%)한다.

※ [사례] A 대학의 경우 ○○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을 교비 6,643만 원으로 매입하여 6년간 이사인 총장이 단독으로 사용  
: (기 존) 시정요구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  
→ (개정안)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

○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.

○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,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(개방이사 제외),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※ [사례] B 법인의 경우 2017년에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임원 취임 : (기존)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 반려 불가 → (개정안) 반려 가능

○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 바,

- 그 교육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, 초·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등, 대학 교원·명예교수·겸임교원·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구체화하여 이사회의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한다.

○ 이와 더불어 개정 「사립학교법」(2020.3.24. 공포, 2020.9.25. 시행)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, 휴직 교원의 신분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
## <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>

- 기존에는 용도 미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, 개정안에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하게 한다.

## <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>

-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,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.

※ (공개내용) 성명, 연령, 임기, 현직 및 주요경력, 친족이사 해당 여부  
(공개시기·방법) 관할청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, 남아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.”라고 강조하며,
- “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

- 【붙임】 1.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개정안  
2.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개정안  
3. 「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



대통령령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#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0호 중 “신원증명서”를 “신원진술서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.

1.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
2.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「민법」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
3.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(개방이사는 제외한다)이었던 사람
4.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장이었던 사람

제8조의3제1항 중 “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”를 “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”으로, “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”를 “1년 동안 공개해야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“확보하여야”를 “확보해야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30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, “50퍼센트”를 “2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”를 “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·배임하거나”로 한다.

제9조의4부터 제9조의11까지를 각각 제9조의5부터 제9조의12까지로 하고,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4(교육경험의 범위)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.

1. 법 제54조의4 또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
2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,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
3.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

제9조의9(중전의 제9조의8)제4호 중 “제9조의7제1항 각 호”를 “제9조의8제1항 각 호”로 한다.

제10조의6의 제목 “(평의원회의 구성)”을 “(대학평의원회의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평의원회는 교원·직원”을 “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”라 한다)는 교원·직원·조교”로, “자료”를 “사람으로”로,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”를 “초과해서는 안 된다”로 한다.

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한국사학진흥재단법」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(이하 “한국사학진흥재단”이라 한다)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) ①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학적부, 조직·회계·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.

1. 학적부
2. 조직·회계·예산 관련 자료

3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·도서·대장·카드·도면·시청각물·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

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③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·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·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.

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.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2. 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사항

3. 기록물의 보존 기간 및 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

4. 기록물의 공개, 열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

5.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4조의6부터 제24조의8까지를 각각 제24조의7부터 제24조의9까지로 하

고,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6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 법 제59조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 제11조제1항제1호나목,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15조제6호 및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의3 등 국립·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제 10호, 제7조의2제5항, 제8조의3제1항, 제9조의2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 1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24조의6의 개정 규정 중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에 대한 부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 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선임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 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조 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이사회의 회의록을 학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부

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임원의 회계부정이나 횡령·배임을 사유로 하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4조(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)</p> <p>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임원의 <u>신원증명서</u></p> <p>11. ~ 14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7조의2(개방이사의 추천·선임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 <p>제8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</p> | <p>제4조(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)</p> <p>①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 <u>신원진술서</u></p> <p>1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의2(개방이사의 추천·선임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.</u></p> <p>1. <u>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</u></p> <p>2. <u>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「민법」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</u></p> <p>3. <u>해당 학교법인의 임원(개방이사는 제외한다)이었던 사람</u></p> <p>4. <u>해당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장이었던 사람</u>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</p> |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①이사회 회의록은 <u>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9조의2(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)</p> <p>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7조제1항, 「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」 제7조제1항 및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<u>확보하여야 하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30퍼센트 이상(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)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</u></p> | <p>①----- <u>회의일부</u><br/> <u>터 10일 이내에 해당</u> -----<br/> ----- <u>1년</u><br/> <u>동안 공개해야</u>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(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)</p> <p>①-----<br/> -----<br/> -----<br/>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br/> -----<br/> -----<br/> -----<br/> -----<br/> ----- <u>확보해야</u><br/> ----- <u>해당</u> -----<br/> ----- <u>10퍼센트</u> --<br/> -----<br/> ----- <u>20퍼센트</u> ----<br/> -----<br/> -----<br/> -----<br/> -----</p> |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3. 임원이 <u>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</u>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제9조의4 ~ 제9조의7</u> (생략)</p> <p><u>제9조의8</u>(위원의 해촉) 대통령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</p> | <p>3. ----- <u>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·배임하거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9조의4(교육경험의 범위)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.</u></p> <p>1. <u>법 제54조의4 또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</u></p> <p>2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 교사,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</p> <p>3.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</p> <p><u>제9조의5 ~ 제9조의8</u> (현행 제9조의4부터 제9조의7까지와 같음)</p> <p><u>제9조의9</u>(위원의 해촉) -----</p> <p>-----</p> |

| 현행  | 개정안   |
|---|---|
| <p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제9조의7제1항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5. (생략)</p>  | <p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제9조의8제1항</u> 각 호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  |
| <p><u>제9조의9 ~ 제9조의11</u> (생략)</p>   | <p><u>제9조의10 ~ 제9조의12</u> (현행 제9조의9부터 제9조의11까지와 같음)</p>   |
| <p><u>제10조의6(평의원회의 구성)</u> ① <u>평의원회는 교원·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</u> 구성하되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<u>자를 포함할 수 있다.</u> 다만,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<u>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| <p><u>제10조의6(대학평의원회의 구성)</u> ① <u>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”라 한다)는 교원·직원·조교 ----- 사람으로 ----- 사람을 -----.</u></p> <p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초과해서는 안 된다.</u></p> |
|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제14조의3(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)</u> 교육부장관은 <u>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</u></p>   |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4조의3(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)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 |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<p>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「<u>한국사학진흥재단법</u>」에 따른 <u>한국사학진흥재단</u></li> </ol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| <p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「<u>한국사학진흥재단법</u>」에 따른 <u>한국사학진흥재단(이하 “한국사학진흥재단”이라 한다)</u></li> </ol> <p><u>제18조(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) ①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학적부, 조직·회계·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학적부</u></li> <li>2. <u>조직·회계·예산 관련 자료</u></li> <li>3. <u>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·도서·대장·카드·도면·시청각물·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</u></li> </ol> <p><u>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</p> <p><u>③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  |
|----|---|
|    | <p>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<br/>· 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<br/>·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.</p> <p>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.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기록물의 보존 기간 및 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기록물의 공개, 열람 및 활용</li> </ol> |

| 현행  | 개정안   |
|---|---|
| <p data-bbox="209 573 379 611">&lt;신설&gt;</p> <p data-bbox="172 1442 743 1480"><u>제24조의6</u> ~ <u>제24조의8</u> (생략)</p> | <p data-bbox="836 237 1062 275"><u>에 관한 사항</u></p> <p data-bbox="807 304 1329 342">5.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</p> <p data-bbox="807 371 1345 544">6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 data-bbox="775 573 1345 1417"><u>제24조의6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 법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 제11조제1항제1호나목,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15조제6호 및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의3 등 국립·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775 1447 1345 1619"><u>제24조의7</u> ~ <u>제24조의9</u> (현행 제24조의6부터 제24조의8까지와 같음)</p> |

**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**

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의 5221 일반기부금의 법인회계란 중 “○”를 “×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의 5221 일반기부금의 법인회계란 중 “○”를 “×”로 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금계산서 등의 계정과목 적용회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일반기부금의 적용회계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**<신·구 조문 대비표>**

| 현 행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개 정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[별표 1]<br>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(제17조 관련)<br>1. 수입 항목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[별표 1]<br>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(제17조 관련)<br>1. 수입 항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과목  |           |            | 적용회계       |      | 해설  | 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 적용회계       |            | 해설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   | 항         | 목          | 법인회계       | 학교회계 |   |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    | 목         | 법인회계       | 학교회계       |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200  | 전입 및 기부수입 | 5220 기부금수입 | 5221 일반기부금 | ○    | ○   |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| 5200 | 전입 및 기부수입 | 5220 기부금수입 | 5221 일반기부금 | ×  | ○ |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|
| [별표 3]<br>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(제17조 관련)<br>1. 수입 항목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[별표 3]<br>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(제17조 관련)<br>1. 수입 항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과목  |           |            | 적용회계       |      | 해설  | 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 적용회계       |            | 해설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   | 항         | 목          | 법인회계       | 학교회계 |   |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    | 목         | 법인회계       | 학교회계       |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200  | 전입 및 기부수입 | 5220 기부금수입 | 5221 일반기부금 | ○    | ○   |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| 5200 | 전입 및 기부수입 | 5220 기부금수입 | 5221 일반기부금 | ×  | ○ |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|



**「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**

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공개대상)**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임원(이사, 감사)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3조(공개내용)**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성명
2. 연령
3. 임기
4. 현직 및 주요경력
5.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 여부

**제4조(공개시기 및 방법)**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임원의 인적사항을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재검토기한)**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부 칙>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 제2016-92호)는 폐지한다.